

● 제301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2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1. 6. 23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】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안일 : 2021. 5. 25.

다. 회부일 : 2021. 5. 31.

라. 의안번호 : 2374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시의회사무처의 설치, 지휘·감독체계 및 사무처장의 직급에 관한 조문 및 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사무처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, 그 밖에 사무처의 설치 및 지휘·감독체계에 관한 조문 체계를 정비함(안 제2조 및 제3조 삭제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~제92조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현행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) 제90조부터 제92조에 따른 사무처장 직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무처 설치, 지휘·감독체계 등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법적 통일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사무처장 직급 삭제 및 지휘·감독체계 등 정비(안 제2조 등)

- 시·도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고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두며(법 제90조),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함(법 제92조).
- 대통령령인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 및 별표 4에 따라 서울시의회사무처장의 직급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, 서울시의회는 「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」를 제정·운영해 오고 있으며, 사무처장의 직급은 지방관리관으로 규정함.
- 본 개정안은 사무처장의 직급을 삭제하고¹⁾, 현행 조례 제2조(사무처의 설치), 제3조(사무처장)에 규정된 사무처 설치와 지휘·감독체계 등을 하나의 조항으로 정리한 후 현행 제3조를 삭제해 정비하려는 것으로

1) 한편, 본 개정안과 같이 사무처장 직급을 삭제하더라도 대통령령인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 및 별표 4, 현행 조례 제6조에 이미 사무처장의 직급에 대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해도 무방함.

법적 통일성과 적합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²⁾

<표 1>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사무처의 설치) ①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(이하 "사무처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사무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"의장" 이라 한다)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사무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</p> <p>③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"의장" 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
<p>제3조(사무처장)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(이하 "처장"이라 한다)을 둔다</p> <p>② 처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.</p> <p>③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<p>제4조 ~ 제8조 (생 략)</p>	<p>제3조 ~ 제7조 (현행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)</p>

○ 한편, 안 제2조에서 사무처장 직급을 삭제한 것은 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(1호)로 지정해 운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.³⁾

2) 참고로, 17개 광역의회 중 사무처장의 직급을 조례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 2개뿐이며, 나머지 14개 의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3)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, 입법, 예·결산, 행정사무감·조사, 의사운영 및 정책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 전반의 업무를 총괄함. 서울시의회는 사무처장의 전문성 확보와 인사권 독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직위를 개방형(1호)으로 지정·운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, 집행부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음. 이와 관련한 의회사무처의 추진계획은 붙임 참조.

- 의회사무기구의 장인 사무처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·운영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최초의 시도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, 신속한 채용절차 추진과 「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」 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의정활동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.
- 아울러,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,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인사권 독립 등을 규정한 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사무처장 직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무처 설치와 지휘·명령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법적 통일성과 적합성을 확보하는 한편, 사무처장을 개방형(1호) 직위로 지정·운영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그 목적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개방형 직위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법 시행(‘22.1.13.)을 위한 제반 사항의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.

붙임 시의회사무처장 개방형직위 신규지정 계획(의회사무처)

시의회사무처장 개방형직위 신규지정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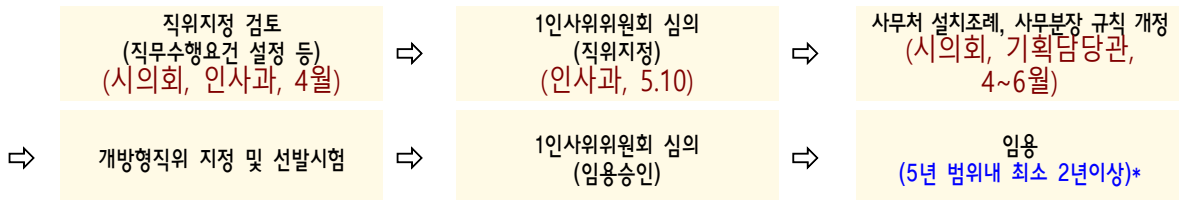
의회운영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시의회사무처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1 추진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(개방형직위)
 - 해당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 시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
-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(개방형직위의 지정)
 - 시·도의 1~5급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10%내 지정
- 「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」 제3조(사무처장)
 - 처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함

2 개방형직위 현황 및 지정절차

- 서울시 개방형직위 지정현황 : 52개 직위(전체 617개 직위)
 - 시의회 : 13(입법, 예산정책, 수석전문위원 11)
 - 집행부 : 39(본청 20, 사업소 19) ※ 개방형 직위수는 시 총괄 관리
- 개방형직위 지정 절차
 - 직위지정 비율, 요건 검토 ⇒ 인사위원회 의결 ⇒ 시의회 설치 조례, 규칙 개정
 - ※ 개방형 직위는 해당 지자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(기구정원 규정 제31조), 현재 처장 직급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 타당



* 임용기간은 5년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 2년 이상(개방형직위 운영규정 제9조제1항)

*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 적용 예외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가능(지방공무원법 제60조)

3 신규지정

□ 대상직위 개요

직 위 명	직 급	주 요 업 무
시의회사무처장 (개방형1호)	(임기제)지방관리관	1. 시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2. 자치분권 실현·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3.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열린의회 구현 4.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

□ 지정 필요성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른 시의회 운영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필요
- 시의회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보좌하고 시의회 사무를 통할하며 의회의 입법, 예결산심의, 정책조사, 사무처 운영 등의 의정업무 총괄하는 직위로서 지방의회, 지방자치 등 분야의 전문성이 각별히 요구됨
- 특히, 입법, 예산, 조직관리, 행정업무 등 의회 사무에 대한 효율적 정책수립과 정책결정을 위하여 공직 내·외부 전문가 임용이 절실하며, 이를 통한 의회운영 효율화 및 의정활동 역량 제고 필요

□ 신규지정 검토

- 관련규정에서 정한 개방형직위 지정기준에 따라 시의회사무처장 직무내용과 성격을 검토한 결과 세부기준별 요건에 부합

[개방형직위 지정기준 (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, 행안부 예규)]

기준항목	세 부 기 준	검 토 의 건
전 문 성	◦ 직무에 요구되는 경험적 또는 학문적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수준	▶ 적 합 - 최신 지식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
중 요 성	◦ 직위의 업무가 시 전체 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대국민 파급효과 정도	▶ 적 합 - 의장 보좌, 의정활동 지원, 의회 운영 등 대시민 파급효과가 중요한 직위
민 주 성	◦ 국민시각의 반영이나 국민의 참여 요구	▶ 적 합 - 객관성, 공정성이 필요한 직위
혁 신 성	◦ 제도나 행태의 개선 또는 개혁 요구	▶ 적 합 -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개혁성이 강조되는 직위
조 정 성	◦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정도	▶ 적 합 - 공직 내·외부의 이해관계가 필요한 직위

4

향후 추진일정

- 개방형직위 지정 요청(시의회→인사과) : 2021. 5월 초
- 개방형직위 지정 등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 : 2021. 5.10.
- 시의회 설치조례, 사무분장규칙 개정 : 2021. 5~6월
- 선발 및 임용 : 추후 예정